

# 안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0
------------	------

발의연월일 : 2009. 11. .

발 의 자 : 주기명 의원

외 인

## □ 개정이유

- 최근 건축물, 교량 등의 시설물 벽면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관조명에 대한 설치기준 등의 제도적 장치는 없어 교통사고 및 시각 공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경관조명은 야간 경관을 훼손할 수 있어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관조명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설치 또는 변경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경관관련 도시시설물의 벽면을 이용한 야간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

## □ 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 발췌서

- 경관법 제24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17조
- 안산시 경관조례 별표 1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표 1의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영 제 17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 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24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별표 1의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u>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안산시 경관조례

별표 1

### 경관관련 도시시설물

#### 1. 건축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공공건축물	가. 공공청사(시청, 동 주민센터) 나.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시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라. 중앙정부에서 건축하는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소방서, 우체국 등) 마. 공공 문화·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 바.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민간건축물	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나목 및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에 관한 사항 나. 미관지구 내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 <sup>2</sup> 초과인 신축·리모델링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 2. 도시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비 고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입체교차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석축 및 옹벽 다. 방음벽 라.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 낙석방지망 · 블라드	

### 3. 가로시설물